

**군산시 공고 제2013 - 1860호**

『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·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3. 10. 16.

**군 산 시 장****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·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****1. 제정이유**

산업단지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회의 및 전시회 개최 등 전시·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“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·컨벤션센터”와 산업전시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**2. 주요내용****가. 운영지원(안 제8조)**

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행사유치 및 개최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
**나. 시설 사용료(별표 제2호)**

산업전시관의 사용료를 정함

### 3. 관련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04조
- 나.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
- 다.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

### 4. 의견제출

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·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(참조 : 지역경제과장)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우) 573-703 군산시 시청로 17 (조촌동 888번지)

군산시청 지역경제과(전화 063-454-2672, 팩스 063-454-2659,

전자우편 : sonzoa@korea.kr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전략기획계

(전화 063-454-26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·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안

**제8조(운영지원)**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별표 2]

## 전시관 사용료

구 분		사용요율	비 고	
장소별	산업전시관(3,697m <sup>2</sup> )	450원/m <sup>2</sup>	1일 기준	
	옥외전시장(7,300m <sup>2</sup> )	150원/m <sup>2</sup>	1일 기준	
	실내로비(1,219m <sup>2</sup> )	2,000원/m <sup>2</sup>	사용면적당	
할 인 할증률	월 별 차등률	1, 2, 7, 8, 12월	30% 할인	
		3월	20% 할인	
	규모별 차등률	1/2미만 사용시	20% 할증	
		옥내외 전체사용시	15% 할인	
	기간별 차등률	15일~1개월 미만	10% 할인	
		1개월 이상~ 2개월 미만	20% 할인	
		2개월 이상	30% 할인	
	시간외 사용료	기간별 차등적용	초과시간당	10% 가산
	유의 사항	·기타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음		